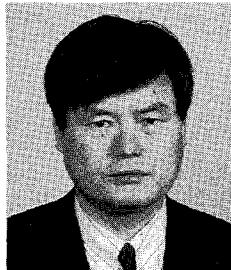


한국 발명환경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2)



박 성 용
<동양라이트 대표>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저자의 승락을 받아 연재하는 것임

<편집자 주>

목 차

- I. 서론
- II.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발명
- III. 한국의 발명현황과 특허제도
- IV. 한국발명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V. 결론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 및 다음호>

2. 발명의 국제 기구

가.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UN 전문 기구로서 1991년 현재 126개 국가가 회원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지적 재산권을 국제적으로 중시하여 확립된 많은 다자간 조약이 있는데, 이들 조약중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과 저작과 예술활동보호를 위한 “베른조약”은 각각 1883년과 1886년에 체결되었다.¹⁸⁾ 처음 명칭은 프랑스어로 번역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동 사무국”이라는 뜻의 BIRPI였는데 그 조직의 이름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WIPO로 부르게 되었다. WIPO는 1974년부터는 국제연합(UN)의 16개 전문 기관중 하나가 되었는데 잘 알려진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교육과학 문화기구(UNESCO)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기구(FAO)와 함께 막강한 조직을 갖추고 국제 사회에 중요한 활동분야에 있어서 특수조직과 전문화된 기술을 가지고 광대한 국제적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하나의 국가간 기구는 UN 총회와 당해 기구총회간 협정을 근거로 한 UN의 전문 기구이다. 1974년 체결된 UN과 WIPO 사이에 맺어진 협정은 WIPO를 하나의 UN 산하 전문기구로 설정한 것이다. WIPO는 2가지 면에서 적절한 활동을 취할 책임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적인 지적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사회, 문화적 발달을 가속시키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가에게 지적재산과 관련된 기술이전을 하는 것이다. 거의 모든 국가는 UN 회원국이고 또

18) 특허청, 산업재산권 라이센싱과 기술이전에 관한 WIPO 아시아 지역 세미나, 국제특허연수원, 1994, p. 467.

한 UN의 대다수 회원국은 대다수 전문기구의 회원국이다.

WIPO의 “기본적 문서”인 규약은 1967년 스특홀름에서 서명한 조약을 말한다. 이 조약에서 발명적 아이디어를 포함한 활동은 상호 의존성이 높은 국제환경에서 장려되어야 한다고 했고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과 상품의 허위출처표시금지에 관한 “마드리드협약”과 원산지 표시 보호 및 국제적 등록을 위한 “리스본협약”과 올림픽 심볼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협약”을 국제적 보호를 확립하고 문학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과 연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관련 보호에 관한 “로마협약”과 반도체 칩에 관한 “워싱톤조약”이 국가간에 합의했던 법적보호의 원인의 되는 조약들이다. 또 국제적 보호를 촉진하는 조약으로는 특허를 위한 국제적 출원준비에 관한 특허협력 조약, 상표의 국제적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약”, “리스본협약” 특허출원 목적을 위한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협약”, 산업디자인의 국제적 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저작권 및 저작 근접권 분야에 관한 “3개 조약”과 음반의 불법조약에 관한 음반 제작자의 보호를 위한 “제네바협약” 그리고 위성에 의해 중계방송과 관련된 “브르셀협약”, “영사 등록협약”이 보호를 촉진하는 조약들이다.

끝으로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한 절차와 분류제도 확립에 관한 조약으로는 국제특허분류협약(IPO) 상표등록을 목적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표의 국제적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상표의 구성요소의 국제적 분류확립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산업디자인을 위한 국제적 분류 확립에 관한 “로카르노협약” 등이 그것이다. 이들 협약의 행정과 신협약의 확립은 국가간의 협력과 협상이 계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일이고 전문비서진에 의

해 지원 받아야 하는 일인데 WIPO는 이런 일을 위해 개괄적인 틀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IPO는 상기 조약에 책임 기구로서 지적 재산권 행정에 있어서 국가간 협력증진과 등록활동을 하며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문학 예술작품의 유포와 같이 창작적 활동을 자주하고 기술이전을 장려하며 산업 문화 발전을 촉진시키는 UN 전문기구이다. WIPO는 국제분류제도의 유지 및 개선, 복잡한 통계와 편집, 법규 등의 수집을 위한 조사활동이 포함되며 현존 조약의 가입 확대를 촉진하고 필요한 경우에 개정을 통해서 조약을 새롭게 하며 신조약을 체결하며 개발협력 활동을 주관 및 참가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WIPO 설립조약은 총회, 협의회, 조정위원회, 국제사무국 등 4개의 서로 다른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총회는 WIPO의 최고 기관인데, WIPO의 권한과 기능중에서도 특히 사무총장을 임명하며, 총회는 WIPO 활동에 관하여 총장이 보고 뿐만 아니라 조정 위원회의 보고와 활동을 재검토하고 승인하며, 국제조약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적 재산권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총장이 수립한 계획안을 승인한다. 총회는 WIPO의 재산규정을 채택하고 제동맹에 공통된 2년마다의 지출예산을 채택하며 UN의 관행을 고려하여 사무국의 사용신어를 결정한다. 또한 WIPO의 비회원국 및 정부간 국제적인 비정부기구를 옵저버로 WIPO관련 회의에 참석시킬 것인가를 결정한다. 협의회는 첫째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에 관하여 WIPO 모든 회원국들간에 의견교환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둘째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법적 기술적 원조에 관한 2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세째 그 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을 채택한다. 넷째 WIPO 설립안의 개정안을 채택할 권리가 있

으며 다섯째, 총회와 같이 어느 국가를 업저버로 참가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며, 협의회의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뿐만 아니라 총회 및 협의회의 주제 초안을 준비한다. 국제사무국의 장은 사무총장으로 “알파드 복쉬” 박사이고 현재 사무국 직원은 UN제도상 확립된 지역적 균등배분의 원칙에 따라 모집된 54개국 38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WIPO의 활동과 재원은 개발도상국가의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데 충당된다. 모든 개발도상국가는 사용자원을 근거로 요청하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법률-기술적 원조를 받을 자격이 있다. WIPO의 개발협력 사업의 주요목표는 인력개발을 통하여 그 개도국의 개발목표에 적당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확립 또는 현대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적 또는 지역적 입법의 제정 또는 개정과 그 입법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편의 국내발명과 예술적 창작 활동 및 그 발명품 또는 예술적 창작품 이용의 장려와 해외에서 특허된 기술의 취득의 편의 및 저작권에 의해 보호 받는 해외 저작물에 접근 편의와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기술적 정보 사용과 접근의 편의 등을 제공하여 개도국을 지원하는데 있다.

원조 유형은 6개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교육 훈련인데 WIPO의 훈련사업은 지적재산권 제도의 사용과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능과 능력을 제공하거나 높이는 것이다. 즉 내외 훈련과정은 지적재산권기구, 기술연구소, 사법 연구소, 산업 연구소 출신 정부관사를 위해 개설된다.

둘째, 법적 지원과 표준화인데

국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화 및 원칙이 포함된 적절한 국가적 입법의 존재는 지적재산권 제도를 사용함으로서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개발도상국가에서 권고와 지원을 계속하였다. 총 50여개 국가가 WIPO의 개발 협력 사업 일환으로 위와 같은 도움을 받았다.

셋째, 권리 위원회인데

권고 위원회는 80여개 개발도상국을 위해 활동했다. 특히 권리 위원회는 입법 및 기타 법률적 사안에 관해 행정기관에 대한 충고, 특허청 관리 개선사항, 전산 및 기타장비 문서의 취득과 사용, 일반공중에게 보다 넓은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권고를 한다.

넷째, 기술혁신 발명활동의 장려인데

발명가가 지적재산권 제도를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내외 국가간 세미나를 비롯하여 발명가를 위한 훈련을 WIPO가 주관했고 많은 개발도상국가가 혜택을 보았다. 실적에 대한 도의적 인정은 발명가에게 만족을 주는 한 요인이 되므로 WIPO는 발명가에 의해 만들어진 특별한 작품에 대해 WIPO 금메달 시상 사업을 추진한다.

다섯째, 기술 이전의 촉진인데

해외 특허기술과 해외 저작물, 특히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생명공학, 컴퓨터 소프트웨어, 위성통신, 반도체칩 등의 취득과 접근과 보호는 WIPO 개발 협력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이전문제는 서로 다른 사회경제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역할에 관한 WIPO주관 국제회의에서 중요한 논점이 되었다.

여섯째, 행정가와 사용자들 간의 대화인데

WIPO는 지적재산권 행정가와 비행정부적 영역에 있는 사용자간의 대화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한 대화는 종종 지적재산권 행정가와 사업가 영역 양측이 WIPO가 주최한 세미나와 심포지움에 참가하는 형태와 정기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졌다.

나. WTO의 TRIPS 협정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문제는 기존의 UN전문기구인 WIPO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 협약들—파리협약, 로마협약, 특허협력 조건(PCT), 세계저작권 협약(UCC), 제네바 협약 등으로서 이미 보호, 실시되고 있었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보호문제가 UR의제로 채택된 것은 기존의 관련 국제협약들의 보호법령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이었고 지적재산권 분야는 농산물, 서비스와 함께 미국의 절대적 비교우위 분야이므로 TRIPs협상에 대한 기초적인 협상지침은 1986년 9월의 푼타델에스테(우루과이 휴양지) 각료선언문에 기록되어 WTO내의 <도표 1>과 같이 지적재산권이사회가 존립하게 되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있어서 기본원칙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은 내국민대우(제3조와 최혜국우대 제4조)의 원칙이었다.²⁰⁾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세계 무역 질서를 세우고 UR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1995년 1월 1일부터 발족되어 2년마다 125개 회원국 전체 각료회의를 열어 상품문제를 협의하게 되고 모든 다자간 무역협상이 WTO를 무대로 전개되어 세계무역기구가 WTO 체제로 바뀌는 셈이다. WTO는 자유질서를 위해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하되 전원일치가 불가능할 경우 가맹국이 각각 1표씩 갖고 투표를 실시해 과반수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세계 무역 기구이다. 이 막강한 기구 속에 <도표 1>과 같이 지적재산권 이사회가 상품과 서비스교역 이사회와 나란히 존립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허 및 발명에 관한 국제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기본원칙은 체약국 국민에게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하고 최혜국대우(MFN) 원칙으로 모든 이익, 혜택, 특전 또는 면책 혜택은 즉시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체약국 국민에게 부여하여야 하는데 몇가지 예외는 인정된다.²¹⁾

UR 지적재산권 협상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관련 국제협약을 최저보호수준으로 하여 이를 강화시키는 이른바 “국제협약 플러스”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선진국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한 것이다.

협상 초기에는 기존의 국제협약과 마찬가지로 개별 국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로 합의된 협정에 조인한 국가에 대해서만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별도의 code를 채택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TRIPs 협정이 일반협정의 일부를 포함함에 따라서 WTO의 일반협정에 조인하는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TRIPs협정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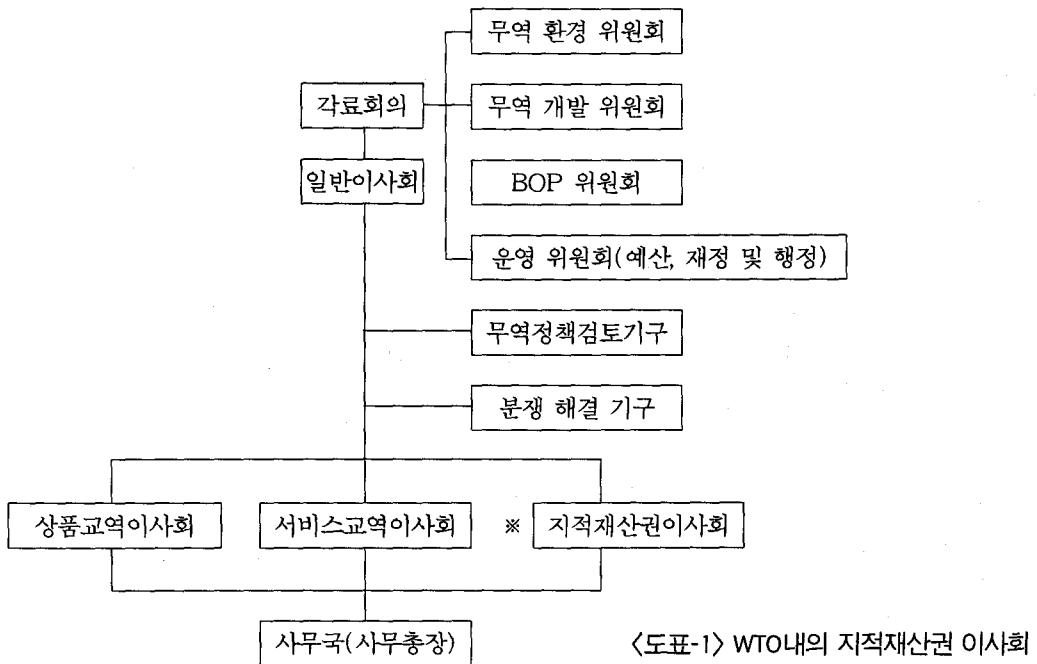
TRIPs 협상은 선·후진국간의 이해가 극심히 대립된 분야였으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어느정도의 의견수렴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보호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며 아울러 내국인의 기술개발 및 창의적 활동을 진작시키기 때문이다.

발명특허에 보호기준은 특허대상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여러 발명도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체약국은 공서양속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건강의 보

19) 손찬현, UR총점검,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993, p. 383.

20) 왕윤종, WTO 출범과 신교역 질서, 대외경제연구원, 1994, p. 361.

21) 특허청, 지적재산권요론, 특허청, 1995, p. 18.



〈도표-1〉 WTO내의 지적재산권 이사회

호, 심각한 환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발명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불특히 대상으로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치료 수술방법과 미생물을 제외한 동식물⁶ 동식물 생산에 관한 생물학적 제법 등인데 단 식물변종은 특허 또는 특별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 실시권은 합리적인 계약조건으로 권리자로부터 license를 받지 못할 경우 강제 실시권 발동이 가능한데 국가비상사태시나 공공 비영리 목적을 위해서 강제실시권 발동이 가능하게 했고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했다. 제법특허일 경우 특허대상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방법인 경우 동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방법이 이미 특허된 제법과 다름을 증명해야 하며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제조한 동일제품은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특허된 제법에 의해서 생산된 것으로 간주하게 협정하였다.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해 효과적

인 본 협정의 시행절차를 각 국내법에 보장해야 하고 침해 행위에 신속한 구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 사법기관은 특허권 침해 수입물품의 시장유통금지 생명권을 발동하고 침해자가 침해 사실을 알았을 경우 권리자에게 손해배상 지불 생명권도 가지며 권리자 보호를 위해 일방적 절차에 의해 가보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끝으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WTO의 설립 결과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를 운영할 것이다. TRIPs이사회는 본 협정을 이행 감시하고 분쟁해결 절차를 지원하며 WIPO와 협의할 것이다.

다. PCT(특허 협력 조약)

전통적인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6년 9월 BIRPI(WIPO의 전신)는 출원인과 국가 특허청 모두의 노력의 중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연구가 시작되었다. 1970년 6월 워싱턴에서 “특허 협력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1978년 1월 24일 효력을 발생

하였으며 1978년 6월 1일부터 최초의 13개 체약국 사이에서 작동이 시작되었다. 오늘날 PCT(Patent Corporation Treaty) 회원국은 49개 체약국에 달한다. PCT에서의 국제출원은 1978년 6월 1일부터 개시되었다. 1990년 말까지 국제출원의 96,871개 기록 가피가 WIPO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었다. 1990년에는 19,000건 이상의 국제출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약 400,000건의 국내 출원을 대체하는 것이다. “PCT” 발전의 이러한 명백한 표시는 단지 그 자체만으로도 개도국 선진국을 막론한 많은 국가가 수년내 PCT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²²⁾

이와같은 PCT는 이름이 표시하는 바와 같이 특허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PCT는 전반적으로 특허출원의 출원, 써치, 심사에 관한 것과 그 안에 포함된 기술 정보의 전파에 관한 합리화 및 협력에 대한 조약이다. PCT는 “국제특허”的 허여를 규정하지 않는다. 특허를 허여하는 업무와 책임은 전적으로 보호가 요청되는 국가의 특허청의 손에 달려 있다. PCT조약은 파리협약과 보완 관계에 있다. 즉 PCT는 파리협약하의 특별협정인 것이다. PCT의 주요 목적은 각국 특허청 및 특허 제도 이용자의 이익을 위해 여러 국가에 보호가 요청되는 발명에 관한 특허 보호에 대한 기존의 출원 방식보다 단순화시키고 또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PCT제도의 가장 중요한 잠재적 장점은 국내특허청의 많은 업무와 그 보호가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추구되는 발전과 관련한 출원에 관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PCT로서 국내

특허청의 업무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고 더 육더 중요한 목표는 PCT체약국의 특허청에서 강한 특허만이 허여되도록 보장하며 산업계나 기타 관련 분야에서 발명과 관련된 기술 문헌에의 접근을 촉진 가속화시키며 개발 도상국이 기술을 접하는데 편의를 얻도록 돋는 것이다.

PCT 체약국의 국민은 국제출원할 수 있는데 국제출원의 대부분의 경우에 국내특허청에서 할 수 있고 국내특허청은 PCT의 수리 관청으로 역할을 한다. 국제출원은 출원일로부터 출원인이 그의 출원서에 지정하는 PCT 체약국에서 국내 출원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제출원에서 이루어지는 언어는 영어, 불어, 독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이며 덴마크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네덜란드어, 핀란드어, 아이슬란드어 등도 받아들인다. 국제조사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은 호주, 오스트리아, 유럽, 일본, 스웨덴, 미국 등과 소련의 국가발명위원회에서 국제 조사를 한다.

PCT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수개의 국가에 특허출원하는 사람에게 장점이 되고 있다. 조약에서 규정된 절차하에서 미생물의 기탁은 출원인의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성을 강화시킨다. 출원인이 미생물에 관계된 출원을 하는 각각의 모든 국가에 미생물을 기탁하는 대신에 한 기탁기관에 단지 한번만을 기탁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기탁자의 안전이 증대된다. 끝으로 조약을 준수하는 것은 회원국의 아무런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계속>

22) 서울 상공회의소, 전계서, p. 306.